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하도급계약 전에도 기술자료 제공 요구 행위 규제〉
■ 김종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800호)

2025. 8.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선 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종민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6. 13.
3. 회 부 일 : 2025. 6.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등을 미리 서면으로 협의하고 위반 시 배상사항 등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어 거래 당사자들이 각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로 확정된 이후만을 규율하고 있음. 따라서 하도급거래 계약 체결 이전에 원사업자가 되려는 자가 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사업자와 계약 체결을 할 것처럼 가장하여 기술자료를 탈취하는 것에 대해선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원사업자가 되려는 자가 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자에게 서면으로 하도급계약에 관한 청약을 유인하는 경우에도 기술자료 요구사항에 관한 서면교부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기술자료 탈취에 대한 보호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의3, 제

25조 및 제25조의5).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원사업자가 되려는 자가 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자에게 하도급계약에 관한 청약을 유인하는 경우에도 현행법에 따른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규정을 준용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 ④ (생략)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신설></u>	⑤ 원사업자가 되려는 자가 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도급계약에 관한 청약을 유인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되려는 자”로, “수급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자”로 본다.
⑤ (생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25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	제25조(시정조치) ① -----

현행	개정안
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u>원사업자</u>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25조의5(시정권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발주자와 <u>원사업자</u>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 ----- ----- ----- ----- ----- ----- -----원사업자(제12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의5(시정권고) ① ----- ----- -----원사업자(제12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현행	개정안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와 원사업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알려야 한다.	에는 원사업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 -----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이후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제12조의3제1항) 또는 사용 및 제3자 제공 행위(제12조의3제4항)¹⁾ 등 기술편취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1)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④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되려는 자가 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자에게 서면으로 하도급계약에 관한 청약을 유인하는 경우에도 해당 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자료의 사용 및 제3자 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으로, 중·소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려는 취지임.

□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²⁾에 따르면, 원사업자의 2.9%, 수급사업자의 1.4%가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기술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비율은 원사업자가 86.1%, 수급사업자가 83.2%였으며,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1.6%였으나, 손해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49.6%(공정위 신고 34.2%, 소송제기 6%)에 달하였음.

□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부터 현재까지 기술유용행위 등으로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을 행한 사례는 24건임.

2) 본 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법정 실태조사로서 2024년에는 제조·용역·건설업에 대해 1만개의 원사업자와 9만개의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음.

<기술유용 행위 등으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주요 사례>

업체 (조치일)	위반 내용	조치내용
LS엠트론 (2022년 3월)	금형 파이프 가공방법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이를 자신의 특허 출원·등록에 사용	○ 시정명령 ○ 과징금 13억 8,600만 원
쿠첸 (2022년 5월)	납품 승인 목적으로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수급사업자의 단가 인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제3의 업체에 전달	○ 법인·개인고발 ○ 시정명령 ○ 과징금 9억 2,200만 원
피에이치에이 (2022년 8월)	타 협력사와의 금형 개발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목적외로 부당하게 사용	○ 법인고발 ○ 시정명령 ○ 과징금 10억 8,800만 원
현대엠시 스탬즈 (2023년 6월)	자사 카메라 제품 개발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임의로 사용	○ 법인·개인고발 ○ 시정명령 ○ 과징금 1억 원
정광테크 (2024년 2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다른 제조업체에게 전달하여 낮은금액으로 양산금형 제작을 의뢰	○ 시정명령 ○ 과징금 3천만 원
하이에어 코리아 (2024년 11월)	기술유용 신고에 대한 보복조치	○ 시정명령 ○ 과징금 26억 원
귀뚜라미 (2024년 11월)	보일러 부품 분야 기술자료 유용	○ 법인 고발 ○ 시정명령 ○ 과징금 9억 5천만 원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기술자료는 한번 유출되면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이를 되돌릴 수도 없으며, 거래상 열위적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원사업자가 되려는 자의 기술자료 제공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현실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처럼 하도급계약 이전이라도 하도급계약에 관한 청약을 유인하는 등 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현행법 제12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긍정적 측면이 있을 것으로 봄.

□ 대한전문건설협회는 핵심 기술자료가 계약 체결 전에 유출되는 경우는 실질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로 수급사업자는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기술자료를 제출하는 등 유용 및 탈취행위로부터 비교적 취약하므로 개정안의 입법 조치에 찬성함.³⁾

□ 그러나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먼저, 계약 전 행위를 현행법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검토임.

3) 예컨대 2023년 현대건설이 중소기업인 우진폼테크에 독점 수주를 약속한 후 '케이스 유압 장치' 등 신기술 자료만 넘겨 받은 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례가 있음. 당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는 현대건설에 해당 장비는 우진폼테크만이 사용하고, 현대건설은 실시료를 청구하지 아니하며 공동연구협약 해지 및 1억원을 보상하라는 중재안을 제시함.

현행법상 하도급거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채위탁 하고, 수급사업자는 이를 이행한 후 원사업자에게 납품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하도급계약을 법 적용의 전제로 하고 있는데, 계약 전의 행위까지 규제의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결정이 필요함.

- 다음으로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안의 취지와 목적달성이 가능한지에 관한 사항임.

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는 ‘부정경쟁행위’를 열거하면서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⁴⁾

□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뿐 아니라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 활동 방해행위로 규율이 가능⁵⁾하고,

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차.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 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현행법은 수급사업자에 비해 거래상 지위가 우월한 원사업자를 규제하여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바, 거래조건의 협상 단계에서는 거래상 지위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으므로 해당 단계까지 법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임.⁶⁾

나아가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게는 행정제재뿐 아니라 형벌까지 부과되므로 법 위반 주체와 대상이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는데, 교섭·협상 단계에서는 향후 해당 거래가 법 적용 대상이 될지도 불명확하고, 실제 체결된 계약이 적용대상이 아닌 때에도 사전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법 적용대상으로 보아 처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⁷⁾

문 의 처

02)6788-5109

8. 사업활동 방해

법 제45조제1항제8호에 따른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기술의 부당이용: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6) 다만,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목적이 양자의 대등한 지위를 추구하고는 있으나, 그 실체적 규정에서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규제의 전제로 삼고 있지는 않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와 같은 주장은 비판의 소지가 있음(예를 들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적용을 하지 않도로 규정하고 있음).

7) 예를 들어 당사자 일방은 하도급거래를 전체로, 당사자 상대방은 하도급거래가 아닌 단순 구매를 전체로 협상을 진행하는 경우나 협상 과정에서 요구 대상 기술자료와는 다른 내용의 거래가 성립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임.